

광주지방법원 2023. 3. 15 선고 2022가단53095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D

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행옥

변 론 종 결 2023. 2. 8.

판 결 선 고 2023. 3. 15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,
가. E(주민등록번호 1 생략)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8. 5. 3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망 F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소유하다가 2017. 11. 7.경 사망하였다.

나.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와 자녀 G, H, E, I이 있다.

다. 피고는 2018. 5. 3.경 나머지 상속인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하고, 이에 따라 2018. 5. 14.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6, 8, 9, 10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E에 대한 J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권을 순차 양수한 채권자이다. 그런데 E은 무자력 상태에서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지분만큼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피고에게 이전하였다.

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E 명의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.

나.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1, 2, 3, 4, 7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의하면, ① E이 2016. 12. 2.경 J 주식회사로부터 1,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, ② 위 대출금 채권이 주식회사 K, 원고에게로 순차 양도된 사실, ③ 원고는 위 대출금 채권과 관련하여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의

소를 제기하여 2022. 4. 7. “피고(E)는 원고(주식회사 A)에게 15,581,997원 및 그 중 12,363,122원에 대하여 2021. 10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”라는 취지의 판결(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4. 7. 선고 2022가소202011 판결, 이하 ‘관련 판결’이라 한다)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E에 대하여 관련 판결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지고 있음이 인정된다.

다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),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,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(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5다2553 판결 참조).

2) 살피건대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, E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유 중인 부동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라 할 것인데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위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.

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라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(또는 공유)이라거나 E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하여

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,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·입증하여야 할 것이고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), 수익자에게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와 E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위 인정사실과 을 제3,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(또는 망인과 공유)라거나,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기여분이 있거나,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마. 소결

결국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희석

별지